

응시자격서류심사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관련)

[공통적용 유의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경력증명서를 사용 ==>
(Q-net →고객만족→자료실→각종서식→국가기술자격 경력증명서)
 - * 단, 국가 및 공공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및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도 인정하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내용이 법규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해당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경력유무를 심사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함**

- 인정되는 각종 협회 경력증명서 (13개 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비파괴검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 등은 각각 발급받아야 함

- 경력사항의 진위여부에 관해서는 해당기관에 문서 및 유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 *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일반 사업장]

- 사업주 본인 : 별지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 사업체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 별지 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 고용보험 등 가입확인서
 - 단 서류심사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 전산조회 가능, 별도확인서 필요없음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가입확인서는 개인별 가입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

- 사업체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로서 4대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별지 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또는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단, 사업주는 제외)의 사실확인서 1부}
 -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첨부(2020년 1월부터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폐업된 사업장]

○ 사업주 본인 : 별지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 폐업사실증명원1부

○ 피고용인

구 분	사업주가 있을 때	사업주가 없을 때
4대보험 가입자	별지7호 서식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고용보험 등 가입확인서	별지7호 서식 경력증명서 (본인작성) + 고용보험 등 가입확인서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자	별지7호 서식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사업주 제외)}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사업주 제외)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첨부(2020년 1월부터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군 경력]

구 분	제 출 서 류
사 병 (부사관 포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 ①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 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경력증명서 (별지7호서식 사용가능)
장 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 ①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 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경력 증명서 (별지7호서식 사용가능) ④ 국방부 발급 장교 자력표 사본 (직인으로 확인 된 것에 한함)

[대학원 이수(예정)자에 실무경력 인정 기준]

가. 대상

- 석사박사과정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학위취득자 포함)
- 연구과정 이수(예정)자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종합된 과정의 이수(예정)자

나. 대학원의 수업연한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 : 각각 2년 이상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종합된 과정 : 4년 이상

다. 실무경력 인정범위 및 유의 사항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 속하는 석사박사과정 이수(예정)자 학위취득자 및 연구과정 이수(예정)자로서 대학원장이 확인한 이수기간(1학기=6개월 인정)
- 대학원의 석사학위취득과정이 2년 과정이면 4년 만에 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학칙에서 정한 2년만 경력으로 인정함
- 대학원의 석사학위취득과정이 2년 과정이나 1년 6월만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 1년 6월만 실무 경력으로 인정함
- 대학원 이수예정자(전과정의 1/2을 초과하여 이수중인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재학기간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1/2을 초과하여 이수중인 자는 이수기간만큼만 인정
- 대학원의 석사학위취득과정이 2년6월인 경우는 대학원장이 확인한 이수기간이 명시되는 경우 인정 가능(성적증명서+학칙을 추가로 제출)
- 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사업체의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는 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무경력으로 인정
- 대학원 이수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은 해당 직무분야의 전공으로 한정(대학원 경력인정은 연구업무 수행을 전제로 인정하는 것으로 일반회사 근무 실무경력 적용과는 차이가 있음, 응시자격의 관련학과 적용이 반드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라. 응시자격 제출 서류

- 대학원장이 발급한 이수기간이 명시된 학위취득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마. 기타

- 대학원 논문주제를 기준으로 경력인정은 불가함 (예: 전공이 경제학인 석사과정 이수자가 논문 주제를 생산관리분야로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경력인정은 불가)

경력증명서

※ 뒤쪽의 경력증명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제출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이 증명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 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공문서·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 주소: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성명: 한글로 작성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④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재직기간: 년·월·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⑥ 소속 및 직위: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⑦ 담당 업무 내용: 담당 업무는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실 확 인 서

수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근무직장명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사실확인서는 (자격명 :) 국가자격시험에 필요한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 (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아래와 같이 입증합니다.

입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		본인과의 관계	
주소			
근무처	직위	근무처 전화번호	

- ※ 입증인 : 객관적으로 수험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한 자 등)
- ※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감증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응시자격에 관한 수험자, 입증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서 입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수집 목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응시자격의 증명
수집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3년간

- ※ 입증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험자의 경력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함

동의하지 않음

첨 부 : 입증인의 신분증 사본(2020년 1월 1일부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